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쟁정책에 관한 소고



송 정 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사무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일탈남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케이스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조만간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와 일탈·남용간 명확한 경계 또는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공정거래법을 전체 체계하에서 단일의 기준에 의해 그 보호대상과 금지대상을 파악하고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I.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일반적으로 재산은 유체재산과 무체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유체재산은 토지, 금전, 집 등과 같이 실체를 가지는 재산을 말하는데 반해, 무체재산은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고도 한다. 지적재산은 새로운 발명·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예술·문학·음악 등과 같이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 부여되는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며, 후자에 부여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의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 범주를 들 수 있다. 첫째로는 새로운 발명·고안·의장을 창작하는 것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인데, 이에 해당하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회로배치이용권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영업을 식별하는 것에 대한 권리인데, 이에 해당하는 권리로 상표권, 상호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 영업비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저작권의 종류로는 세 가지 범주를 들 수 있다. 첫째, 저작재산권으로, 이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복제권, 전송권, 공연권, 대여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저작인격권으로, 이에 해당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작인접권으로 실연, 방송, 레코드 제작 등에 대한 권리를 들 수 있다.

II.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지적재산권은 발명, 창작 등을 통해 인간의 물질적·정신적 생활을 보다 풍요하고 윤택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모방과 복제는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새로운 지적재산을 개발했는데 쉽게 모방되어 널리 사용된다면 연구개발 의욕이 상실되어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창출될 수 없게 되고 이는 소비자후생 수준의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

한편, 연구개발자가 장시간 연구하여 개발한 것을 모방 또는 위조하여 마치 모방자 또는 위조자가 개발한 것처럼 유통시킨다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법률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구체적 규정내용이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적재산권의 보유자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리를 부여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Ⅲ.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경쟁

지적재산권의 보유자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공정거래법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부터 거래상대방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목적과 경쟁촉진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 제도는 최적의 자원배분을 도모하고 소비자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목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그 보유자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리를 인센티브로 부여하여 발명과 창작을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이익의 증진을 추구하는데 반해, 공정거래제도는 경쟁을 제한하는 일련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발명과 창작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킴을 도모한다.

이러한 양 제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제59조)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법률들에 의거하여 인정된 범위를 일탈하여 지적재산권이 행사되거나 그 권리를 남용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거래제도의 경계를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에 의해 인정된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되는지 여부에 두고 있는 것이다.

Ⅳ. 공정거래법상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금지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로 인하여 공정경쟁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등을 운용하고 있다.

1.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주요내용

상기 지침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산업재산실시 허락계약, 저작물이용 허락계약, 노하우사용 허락계약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발생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에게는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지침으로 삼고 있다. 산업재산 실시 허락계약상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재료, 부품, 제조설비 등의 구입처 제한

산업재산권자가 제공한 기술이나 상표, 의장을 사용하여 산업재산 실시권자(이하 '실시권자'라 한다)가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부품, 제조설비 등을 산업재산권자 또는 산업재산권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② 상표 등의 사용의무

특허발명 실시권자나 실용신안 실시권자로 하여금 계약제품에 대하여 특허권자나 실용신안권자가 지정하는 상표, 의장 등을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③ 수출지역의 제한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자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계약제품을 수출하도록 하거나,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의 수출가능 또는 수출금지 대상국가를 지정하거나,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의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수출량 또는 수출금액을 제한하는 경우

④ 판매지역의 제한

산업재산권자와 실시권자가 경쟁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실시 허락계약에 있어서 판매지역의 제한을 통하여 국내 판매지역의 분할에 합의하거나 또는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재판매지역을 제한함으로써 수평적 경쟁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⑤ 거래상대방의 제한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자 또는 산업재산권자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계약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의 판매 가능상대방 또는 금지상대방을 지정하는 경우

⑥ 거래수량 제한

산업재산권자가 계약제품의 제조판매량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실시권자로 하여금 그 이상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산업재산권자가 계약제품의 최소제조·판매목표량 또는 금액을 설정하여 실시권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산업재산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⑦ 거래방식 및 판매(재판매)가격의 제한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에게 일정한 거래방식을 지정하거나 계약제품에 대한 판매가격 또는 재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경우

⑧ 특허권 등 권리소멸후 사용제한

계약기술(제품) 등에 관한 특허권 등의 권리가 소멸된 후 실시권자가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기술료를 내도록 하거나 당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⑨ 계약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한 기술료부과 및 끼워팔기

계약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계약기술 등의 실시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기술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거나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제품을 일괄해서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⑩ 기술개량 제한 및 연구개발 제한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계약기술(제품) 등과 관련한 개량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자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계약기술(제품) 등과 관련한 개량을 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산업재산권자가 실시권자로 하여금 실시권자의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계약기술(제품)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또한, 상기 지침에서는 저작물이용 허락계약, 노하우사용 허락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산업재산실시 허락계약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함을 규정하고 있다.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해당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상기 지침은 병행수입이 독점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당해 상품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행수입 되는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고 그 외에도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상기 고시에서는 정당한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 거절 및 중단,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취급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허용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효과가 크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금지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및 동 법 시행령(제43조)은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

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 창작성, 예술성 등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자유가격경쟁에 맡길 경우 양서의 축소, 유통질서의 왜곡 등 시장실패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상기 법령규정에 근거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2002. 12월 고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04. 12. 31일까지는 모든 도서와 일간신문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V. 향후 정책과제

상기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일탈·남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케이스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조만간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적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인정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회의에서 단골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와 일탈·남용간 명확한 경계 또는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공정거래법을 전체 체계하에서 단일의 기준에 의해 그 보호대상과 금지대상을 파악하고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도입계약이 국제계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국제예양 및 국제관할권의 범위 또는 역외적용 기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상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입장과는 거리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